# 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

[시행 2021. 8. 9.] [산림청훈령 제1502호, 2021. 8. 9., 일부개정]

산림청(산림자원과), 042-481-4105

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5조(이하 "법"이라 한다.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.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.) 제11조,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, 사업시행 요령, 사업비 산출기준,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기본방향)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.

- 1.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
- 2.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
- 3.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
- 제3조(정의) ① "솎아베기"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.
  - ② "발주자"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·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,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·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"관리기관"으로 칭한다.
  - ③ "감독자"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.
  - ④ "실시설계자"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  - ⑤ "책임기술자"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 - ⑥ "감리자"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  - ⑦ "감리원"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 - ⑧ "사업시행자"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  - ⑨ "현장대리인"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,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⑩ "작업원"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훈령은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• 감리,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.

- 제5조(설계·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) 설계·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
  - 2.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
  - 3.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·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
  - 4.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로써 설계・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
  - 5.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·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

#### 제2장 설계

- 제6조(사업계획)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(산주 신청용)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기본설계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.
  -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.
- 제8조(실시설계의 대상 등)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.
  - 1. 가지치기・수형교정
  - 2.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 가꾸기
  - 3. 산물수집, 작업도로망 설치
  - 4.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-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국・공유림: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ha 이상
- 2. 사유림: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ha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.
- 제9조(실시설계의 시기 등)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,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 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 -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IV-1. 실시설계 표준지(용역수행)의 조사·관리에 따른다.
- 제10조(국유림의 실시설계)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,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「지속가능한산림자원 관리지침」IV-3. 실시설계・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・관리에 따른다.
- 제11조(책임기술자)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・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 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실시설계의 활용)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.
  - 1.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
  - 2.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
  - 3. 숲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
  - 4. 감독자가 감리,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 감독할 경우
  - 5. 감리자가 실시설계,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
- 제13조(실시설계의 내용) ① 실시설계는 지역산림계획, 산림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,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.
  -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설계설명서 : 별지 제7호서식
  - 2. 소반별 시방서 : 별지 제8호서식
  - 3. 작업지시도: 별지 제9호서식
  - 4.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: 별지 제10호서식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: 별지 제11호서식
- 6. 사업비 원가계산서 : 별지 제4호서식
- 7. 설계내역서 : 별지 제5호서식
- 8. 사업대상지(실행)내역서 : 별지 제12호서식
- 9. 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: 별지 제13호서식
- 10.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: 별지 제14호서식
- 11.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 서
- 12.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(표준지 상세도 포함): 별지 제37호서식
- 13.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: 별지 제40호서식
- 14.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: 별지 제41호서식
- 15. 현장 배치 확인표(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)
- 16.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
- ③ 실시설계도 · 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.
-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, 작업요령,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실시설계의 확정·변경)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과 "계약조건"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선 목

제15조(선목의 대상 등)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1. 미래목 선목
- 2. 제거 대상목 선목
- 제16조(선목의 시기ㆍ절차)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·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.
  - ③ 설계ㆍ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.
  - 1.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,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2.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,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4.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(부분)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·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설계·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.
-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선목의 자격)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- 1. 임업직 녹지직 공무원
- 2. 설계·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(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.)
- 3. 사업시행자
- 4. 기능인영림단(국유림에 한한다.)
- 5.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- 6. 독림가, 임업후계자(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.)
- ② 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[별표 3]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(선목의 내용)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.

- 1.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(기본설계),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,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.
- 2.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.
- 3.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(적색) 또는 임업용페인트(적색)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.
- 4.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수 있다.

#### 제4장 사업시행

제19조(현장대리인)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[별표 3]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
- 2.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(국유림만 해당한다)
-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(기본설계), 실시설계도 서 및 계약 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1. 600ha 이하 사업장 : 현장대리인 1인 이상
- 2. 600ha 초과 사업장 : 현장대리인 2인 이상
-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.
- 1.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 · 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
- 2. 사업장이 동일 시 · 군에 위치하는 경우
- 3.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
-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⑥ 숨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,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작업원)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%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며, 그 외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30%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산주,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%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.
  -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,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관련서류)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착수계 : 별지 제15호서식
  - 2. 작업계획서 : 별지 제16호서식(장비 인력 투입계획 등)
  - 3. 작업원 운영계획서 : 별지 제17호서식(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,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)
  - 4. 안전관리계획서 : 별지 제18호서식(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)
  - 5. 현장 배치 확인표(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)
  - 6.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
  - ②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완료계: 별지 제19호서식
- 2.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: 별지 제20호서식
- 3.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: 별지 제21호서식
- 4. 사업 전・중・후 각각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(CD 등)
- 5. 안전교육일지: 별지 제23호 서식
- 6. 완료도면: 별지 제36호 서식
- 7.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(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)
- 8.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
- 제22조(일정관리)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,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,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,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23조(품질관리)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·검토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・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·중·후 및 원·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24조(안전관리)**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.
  -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・비치하여야 한다.
  - 1.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
  - 2. 유류,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
  - 3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
- 5.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
- ③ 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 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,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,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숲가꾸기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,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구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등록된 작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.
- **제25조(재해관리)**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  -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(감염목 등)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작업장 관리)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  - 1. 작업장 내 소로길(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)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2. 작업 중 발생한 폐유ㆍ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.
  - 3.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,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.
  - 4.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.
  - 5.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6. 그 밖에 감리원,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

#### 제5장 감 리

제27조(감리의 대상 등)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도 필요에 따라 감리를 생략하고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할수 있다.
-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IV-2. 감리 표준지(용역으로 수행)의 조사·관리에 따른다.
- 제28조(감리의 시기)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,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·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(실행)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제29조(감리원)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, 실시설계도 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,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0조(감리의 내용)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: 별지 제25호서식
  - 2. 선목 예비(부분)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: 별지 제26호서식
  - 3. 중간감리보고서: 별지 제27호서식
  - 4. 감리일지: 별지 제28호서식
  - 5.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: 별지 제29호서식
  - 6. 사업대상지(실행)내역서 : 별지 제12호서식
  - 7.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: 별지 제30호서식
  - 8. 감리완료보고서: 별지 제31호서식
  - 9. 임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: 별지 제32호서식
  - 10.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: 별지 제33호서식
  - 11.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: 별지 제34호서식
  - 12.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: 별지 제35호서식
  - 13. 완료도면: 별지 제36호서식

- 14.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(표준지 상세도 포함): 별지 제37호서식
- 15.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: 별지 제38호서식
- 16.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: 별지 제39호서식
- 17.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: 별지 제40호 서식
- 18.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: 별지 제41호서식
- 19. 감리 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
- 20. 현장 배치 확인표(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)
- 21.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
- 22.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: 별지 제42호서식
- 23.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

## 제6장 완 료

- 제31조(실시설계 용역의 완료)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·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 · 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(CD 등),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제32조(사업시행 완료) ①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 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·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 -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(CD 등),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,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.
  -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/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  -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및 제36호서식에 따라 숲가꾸기 관리대장(사업대상지(실행)내역서) 및 숲가꾸기 관리도(준공도면)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3조(감리 용역의 완료)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(CD 등),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,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숲가꾸기 설계 · 감리를 용역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의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은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다.
  -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

# 제7장 비용의 산출 등

제34조(적용기준)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, 선목의 비용,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[별표]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.

제35조(용역비 등) 실시설계,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[별표]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.

- 제36조(사업비)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·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[별표]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[별표]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- 제37조(사업의 발주) 풀베기 사업을 연 2회 실시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 다만 사업시행의 경우 통합 발주 시에는 반드시 1차 풀베기에 대한 기성검사 처리를 해야한다.
- 제38조(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세부기준)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풀베기 설계·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, 덩굴제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기준, 어린나무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른다.
- 제39조(재검토 기한)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부칙** <제1502호,2021.8.9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